

4/‘중국잔류 일본인’을 둘러싼 포섭과 저항

‘본국 귀국자’라는 다중적 아이덴티티의 가능성

현무암



출처: 일본 TBS 드라마 〈강행귀국-잊혀진 신부들(強行帰国-忘れ去られた花嫁たち)〉(http://www.tbs.co.jp/kyoukou_kikoku/), <http://aichi-kyuuenkai.com/torikumi200703.html>, <http://www.jdla.jp/cgi-bin04/column/zan/diary.cgi?mode=view&no=224>

현무암 1969년 생으로 제주도에서 성장했다.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 박사과정 수료했다. 동대학원 정보학환 조수(助手)를 거쳐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연구원 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은 미디어 문화론과 한일관계론이며, 저서로는 『韓国のデジタル・デモクラシー』(集英社新書, 2005), 『統一코리아: 東アジアの新秩序を展望する』(光文社新書, 2007), 『コリアン・ネットワーク』(北海道大学出版会, 2013), 『大日本・満州帝国の遺産』(講談社, 2010, 공저) 등이 있다.

1.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일본인’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민족적 소수자’(에스닉 마이너리티)가 되어 가는 ‘중국잔류 일본인’을 통해 일본의 이들에 대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일본 사회 속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위치 및 전후 역사 인식 속에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이유는 일본 제국주의 붕괴 후의 즉각적인 본국 귀환 대신 수십 년 후에야 이루어지는 귀국이 생활상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이주’가 됨으로써 이들이 ‘본국 귀국자’라는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본 국민들의 동정 속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 귀국자’라는 특수한 여건과 아이덴티티 속에서 일본 사회 적응에 실패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민족적 소수자’로 자리매김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중국잔류 일본인’으로서 1970년대 이후 일본에 귀국한 사람들을 ‘중국 귀국자’라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중국 귀국자는 민족적 소수자의 틀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당시 어느 정도의 연령에 이르렀던 ‘잔류부인(殘留婦人)’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잔류고아(殘留孤兒)’의 경우도 부모 혹은 조부모의 한쪽이 일본인일지라도 대부분 중국인으로 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다. 스스로가 중국 귀국자인 나가사키(長崎)대학의 미나미 마코토(南誠)가 지적하듯이, ‘일본인이라고 자칭’하더라도 ‘문화적 표상은 중국적’인 중국 귀국자는 정치적으로는 일본인 혹은 일본계(日本系)라는 틀에 놓이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중국인 혹은 중·일의 혼합이라고 흔히 파악된다. 이처럼 포섭과 배제가 뒤섞이는 타자화의 힘으로 인해 객체로 다루어짐으로써, 이상과 같은 담론과 차별구조가 구축·재생산되어 왔던 것이다.¹ 하지만 동시에 전쟁 피해자로서의 ‘본국 귀국자’라는 위치에 있는, 혈통적으로 일본인인 이들은 법적인 원호대상

이 되어 민족적 소수자의 틀에 머물지 않는 문제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귀국자의 다층적인 사회적 위치와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일본 사회의 ‘자국민’인 귀환자와 재일코리안 혹은 일본계 브라질인 등 일본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여타의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대응의 차이 속에서 드러나는 일본의 다문화적(혹은 민족주의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중국 귀국자에 대한 일본의 제도적인 측면(포섭)과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라는 형식으로 표면화된 이들의 권리 획득을 위한 이의제기(저항)의 과정을 통해 일본의 다문화적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국 귀국자는 소수자로서의 위치만이 아니라 패전 말기의 극심한 혼란과 전후 중일관계 속에서 ‘기민(棄民)’으로 귀결된 자신들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 되묻는, 일본의 전후 처리와 역사 인식을 투영하는 전쟁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전쟁 희생자의 호소를 물리칠 때 흔히 동원되는 ‘전쟁책임 수인론(受忍論)’, 즉 전쟁상황에서의 고난은 모두가 참고 견뎌야 한다는 논리와의 관계를 통해 검증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본국 귀국자’라는 위치는, 다름 아닌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본국 귀국자’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해방 후 사할린에 남겨지게 된 한인들에 대해, 한국은 그 책임을 전적으로 일본에 전가하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² 해방 후 수십 년이 지나 수용 능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영주 귀국이 허용된 ‘사할린잔류 한인’들은 일본의 중국 귀국자와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사할린 귀국자’도 ‘사할린잔류 일본인’이라는 카테고리에 담겨, 본국 귀

1 南誠, 『『中国帰国者』をめぐる包摂と排除: 国籍と戸籍に注目して』, 庄司博史 編, 『移民とともに変わる地域と国家』, 吹田: 人間文化研究機構国立民族学博物館国立民族学博物館, 2009, 121쪽.

2 한국과 일본의 ‘사할린잔류 한인’을 둘러싼 외교적인 대립에 대해서는 玄武岩, 『サハリン残留韓国・朝鮮人の帰還をめぐる日韓の対応と認識: 1950~70年代の交渉過程を中心に』, 『同時代史研究』第3号, 東京: 日本経済評論社, 2010을 참고.

국자와 같은 종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재중동포들(중국조선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식민지 시기에 만주로 건너가 정착했던 이들이 최근 다수 내한하여 일부는 한국 국적을 회복/취득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의 ‘민족적 소수자’의 위치에 머물고 있다. 조선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은 일본의 중국 귀국자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중국 귀국자에 대한 정책과 이들의 아이덴티티라는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고찰은, 한국 사회가 ‘본국 귀국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관한 성찰과 금후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즉, 일본의 중국 귀국자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를 돌아보는 현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2011년부터 홋카이도에 정착한 ‘사할린잔류 일본인’의 다문화·다언어적 생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홋카이도 중국 귀국자 지원교류센터’에서 조사를 벌여왔는데, 단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각지의 이러한 센터는 중국 귀국자가 주된 이용자다. 홋카이도는 귀국자들이 특별히 많이 정착한 곳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중국 귀국자와 더불어 사할린 귀국자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 행정상 이들에 대해 ‘중국잔류 방인(邦人=일본인) 등’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 사할린 귀국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사할린으로부터의 영주귀국자와 국적 회복자를 중심으로 한 재한조선족과의 공생에 대한 전망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할린 귀국자가 다수 거주하는 홋카이도의 사례를 활용하면서, ‘중국잔류 일본인’이라는 ‘민족적 소수자’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2. ‘중국잔류 일본인’의 역사적 형성

1) 재만(在滿)일본인의 내부 식민주의적 성격

‘중국잔류 일본인’이란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침략과 전쟁 수행의 과정에서 대륙으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패전 후 일본으로 귀환하지 못한 채 부득이하게 현지에 남아 수십 년 동안 생활하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들은 본래 일본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세운 후 관동군의 만주통치와 대소(對蘇)전략의 일환으로 보내진 약 27만여 명의 ‘만몽개척단’과 이들을 원조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만주개척 청소년 의용대’ 및 ‘대륙신부’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 소련군이 진격해 오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생존을 위해 현지인에게 몸을 위탁하거나 팔려가게 된 여성 및 부모를 잃거나 홀로 남겨지게 된 아동을 지칭하여 지금은 ‘중국잔류 일본인’이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른바 ‘중국잔류 부인’(이하 잔류부인)과 ‘중국잔류 고아’(이하 잔류고아)가 1972년의 중일수교 후, 특히 1980년대 들어서 방문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본으로 ‘귀국(이주)’하게 되었다. 먼저 잔류고아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부모형제와 상봉하게 되었는데, 미디어에서 매일처럼 상봉 장면을 다룬 것이 이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83년 KBS에서 방영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남북 이산가족찾기 방송처럼 ‘감상(感傷)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후 잔류부인들의 영주귀국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잔류’의 기간이 수십 년에 이름에 따라 이들의 언어와 가족관계가 얽히게 되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일본 정부의 수용정책도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간신히 ‘조국의 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일본 사회의 차별적 시선은 귀국자들을 더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중국 귀국자의 영주귀국은 최근 그 수가 대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이제 고령이 된 1세의 노후문제와 2·3세의 언어 및 생활환경 문

제가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귀국자의 다수가 일본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하나의 마이너리티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중국에 잔류하게 되는 과정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침략과 궤를 같이 한다. 제국 판도의 확장과 더불어 지배 민족이 식민지로 확산해 감과 동시에 새롭게 제국의 신민으로 포섭된 사람들의 생활권도 확대되어 일본 내지(内地)로 향하게 된다. 특히 지배 민족의 식민지 진출은 정치적 경제적 우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 구성의 공간적 재편이면서도, 외지(外地)에서 내지로의 이동처럼 그 내부에 존재하는 또 다른 식민주의적 구조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국책의 이름 아래 만주라는 ‘신천지’로 향한 이른바 ‘만몽개척단’은, 제국주의적 성격과 내부 식민주의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적인 위치는 전후 제국주의적인 이동이 국민국가로 수축하는 과정에서 패전의 부하가 집중되어, 만주 이주자들은 ‘도피행’이라 불리는 피난 과정 속에서 비극적인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살아 남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국민국가적 재편 과정에서 버려지고 잊혀진 잔류부인 및 잔류고아가 되어, 지금에 이르러서도 일본 사회에 전쟁의 의미를 되묻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보면 ‘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국된 만주국의 실질적인 지배 민족은 일본민족이었고, 따라서 재만일본인은 모든 자원과 수혜를 독점하는 권력자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붕괴는 이러한 권력의 해체에 다름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만일본인의 비극적인 운명은 그들이 제국주의 침병 노릇을 한 업보로 인식되었다. 즉,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시각도 재만일본인을 제국주의적인 주체로만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귀국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적 성격과 더불어 식민주의적 성격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은 단지 만주 귀환이 원폭 피해 및 공습 피

해와 더불어 전후 일본의 가해자적 위치를 피해자적 위치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3종 세트'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쇼와칸(昭和館)³에서 보이듯이 보수우익 세력에 의해 만주 귀환이 피해자적 위치의 근거로 전유되는 것에 저항하고, 원폭 피해가 평화운동의 거점이 되는 것처럼 제국주의 하에서 희생된 민중의 전쟁 피해와 경험을 되새겨 중일우호와 반전평화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연구성과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이래 중국 귀국자 문제를 연구해 온 아라라기 신조(蘭信三)는 편저서 『중국잔류 일본인이라는 경험』의 총론에서, 1980년대 잔류고아 문제가 조명을 받게 된 것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가난한 중국에 남겨진 “불쌍한 일본인의 구출”이라는 민족주의적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중국잔류 방인’ 대신에 ‘중국잔류 일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공간에 포섭되는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차단하기 위함이다.⁴ 이 저서에는 중국잔류 일본인의 비극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트랜스내셔널한 주체로 파악하려는 시각으로부터의 다양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⁵

그렇다면 중국 귀국자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그 내부 식민주의적 배경으로부터 살펴 보자.

3 일본의 전중 및 전후(1935년 경부터 1955년 경까지) 시기에 고난을 겪은 전몰자 유족이나 국민들의 생활상의 역사적 사료나 정보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후세대에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1999년 세워진 국립 박물관. <http://www.showakan.go.jp>

4 蘭信三 編, 『中国残留日本人という経験: 「満州」と日本を問い続けて』, 東京: 勉誠出版, 2009, (49)~(50)쪽.

5 집필자가 총 27명에 이르는 이 저서는 ‘중국잔류 일본인’의 ‘잔류자’로서의 경험과 ‘귀국자’로서의 경험을 역사적·사회학적으로 다룬다. 동시에, 이전의 공동연구의 성과(『中国帰国者の生活世界』, 行路社, 2000)로부터 10여 년이 지나 새롭게 대두하는 ‘귀국자 자녀’들의 학교 적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다가서고 있다. 각 논문도 실증적인 역사적 관점과 라이프 히스토리, 에스닉 미네리터론, 글로벌 이동론, 표상 분석, 내셔널리즘 비판 등 복합적인 방법론과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에 의거하여 통합적으로 구성된 중국 귀국자 연구를 집대성한 역작이라 볼 수 있다.

러일전쟁을 통해 관동주(關東州)와 만철(滿鐵)을 획득한 일본은 점차 ‘특수권익’이 위협당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일본 관동군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여 “제국의 지위를 태산처럼 안정시키”기 위해 “제국 국방의 제1선을 형성”하는 “전략적 추기(樞機)”로 만몽영유를 획책하게 된다. 만주사변(1931)은 관동군의 만몽영유계획의 일환으로서 실행되었지만 그 계획은 얼마 지나지 않아 좌절되었고,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계획으로 부득불 전환하게 된다.⁶ 이렇게 해서 이듬해 괴뢰국가 만주국이 건국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만주국 건국 후에도 소만(蘇滿)국경의 광대한 지역에는 항일운동이 활발했고, 관동군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하지만 관동군의 증강은 소련을 자극할 것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주국군에게 치안을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⁷ 이 때문에 관동군은 일본 농민의 만주 이주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실험이민이라는 명목으로 수행된 무장이민이 참담한 결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관동군은 1936년 ‘만주 농업이민 백만호 이주계획’을 발표한다. 허무맹랑한 계획이었지만 쇼와공황의 결과 경제재생 지정촌이 되어 부채와 곤궁에 신음하고 있던 농촌의 촌민들에게는 한줄기 서광으로 비쳤다.⁸ 1936년 2·26사건 후에 농촌개혁론자가 득세하자 백만호 계획은 중대 국책이 되었고, 경제재생법의 적용을 받게 된 농촌은 개척단을 구성해 만주에 분촌을 형성하게 된다. 국책으로 수행되는 이상 경제재생을 위해서도 해당 촌은 충실히 따라야만 했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농촌의 과잉인구 해소라는 당초 의도는 전쟁 경기에 따른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과 노동시장 진출로 인

6 강상중·현무암 지음, 이목 옮김,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다카기 마사오, 박정희에게 만주국이란 무엇이었는가』, 책과함께, 2012, 138쪽.

7 井出孫六, 『中国残留邦人: 置き去られた六〇余年』, 東京: 岩波新書, 2008, 4쪽.

8 井出孫六, 『中国残留邦人』, 23쪽.

해 그 의미가 퇴색하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는 오히려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진다. 그에 따라 만주국에는 군수물자 및 식량의 대일 공급지라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된다. 특히 노몬한(Nomonhan) 사건(1939)으로 소련과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개척단은 소만(蘇滿)국경 부근의 군사거점에 집중적으로 입식하게 되어 대소방위 강화라는 역할도 지니게 된다.

당시에는 만주 개척이라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팸플릿, 신문, 잡지, 레코드, 영화, 연극, 소설 등 매스미디어를 동원한 선전, 권유활동이 전개되었다.⁹ 만주는 ‘이민의 낙토’로 여겨졌고, 농촌 사람들은 신천지의 개척자로서의 이상을 품게 되었다. 여기에는 일본의 ‘지도적 지위’에 기반한 민족주의적 사명이 강조된 이데올로기가 동원된 한편, 권력의 프로파간다가 모집이나 협박 등 식민지 조선에서의 초보적인 강제연행과 유사한 추진장치로 작동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입식된 개척민들은 자기들 때문에 마을을 떠나는 만인(滿人)들에 대해 미안하다는 마음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다. 제국주의 침병이 되는 자신들의 마음의 흔들림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경작지가 비옥한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단순한 ‘개척단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의문을 갖는 이는 없었다.¹⁰ 당시의 개척단 관계자에게 침략·가해의 의식은 희박했다. 더욱이 만주 이민의 모태가 된 농촌은 만주국 정부로부터 많은 토지와 공간을 제공받아 점차 빈민층을 내보내게 된다.¹¹ 하지만 이처럼 비농업숙련자나 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이 다수 포함된 만주 이민 대부분의 농업경영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량의 이농자가 발생해 개척단의 풍기를 문란하게 된 것이, 소련 참전 후 현지 주민으로부터 습

9 루이즈·ヤング, 『総動員帝国: 満州と戦時帝国主義の文化』, 東京: 岩波書店, 2001, 251~260쪽.

10 井出孫六, 『中国残留邦人』, 31쪽.

11 루이즈·ヤング, 『総動員帝国』, 212쪽.

격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¹² 만몽개척단은 이러한 제국주의적 확장의 일익을 담당한 침략자의 성격을 띠고 동시에 일본 국내적으로는 만주에 농촌을 무한히 확장하여 농촌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획된 내부 식민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식민주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패전 직전의 상황이다. 전황이 급박해지자 관동군은 개척단의 장정들에게 소집명령을 내리게 된다. 더구나 대소 전략상 소련의 참전 시에 만주의 대부분을 포기하여 일본 전반의 전쟁 수행을 유리하게 전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몽개척단의 후방으로의 퇴각이나 안전확보를 고려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급박한 전황 속에서 개척단에는 노인과 부인, 어린이들만이 남겨지게 되었음에도, 8월 2일 신경(新京)의 방송국으로부터는 “관동군 체제는 반석 위에 든든하다. 개척단 제씨(諸氏)는 근심말고 생산에 매진할 것”이라는 취지의 관동군 성명서가 발표되었다고 한다.¹³

만몽개척단은 관동군이 재만일본인을 보호해 주는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누구 하나도 의문을 품지 않았다. 하지만 소련이 참전한 다음 날, 민간인의 보호를 담당해야 할 부서의 관동군은 군인 가족만을 안전지대로 피난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¹⁴ 관동군의 퇴각이 시작되자 현지 농민들의 원한이 개척단에게 향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1945년 8월 당시 약 155만 명의 재만일본인이 있었는데, 대략 27만여 명의 개척단 중 4만 7000명은 현지에서 군에 소집되었다. 남겨진 그 외 22만 3000여 명의 재만일본인이 맞닥뜨린 현실은 비참 그 자체였다.

식량 공급지와 인구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배출구 역할에 더하여 제국 방위라는 임무까지 짊어진 만몽개척단은 대부분이 소만국경 등

12 猪股祐介, 「満州農業移民から中国残留日本人へ」, 蘭信三 編, 『中国残留日本人という経験: 「満州」と日本を問い続けて』, 16쪽.

13 井出孫六, 『中国残留邦人』, 63쪽.

14 ルイーズ・ヤング, 『総動員帝国』, 272쪽.

지의 변경에 입식되었다. 패전의 소식을 접하고도 피난을 떠나지 못한 이들은 집단자결을 선택하거나 마을에서 버티다가 소련군의 총탄에 쓰러져갔다. 피난길에 올랐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창춘이나 하얼빈 등 도시지역까지 이어진 이들의 ‘도피행’은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견뎌내기 힘든 ‘고난의 행군’이었다. 운 좋게 수용소에 도착해도 굶주림과 전염병이 만연했으며, 젊은 여성은 소련군으로부터 능욕을 당하기도 했다. 잔류부인과 잔류고아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겨났다.

2) 중국 귀국자 문제의 생성

엄밀히 말하자면 이때까지는 아직 ‘중국잔류 일본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이 1946년부터 GHQ(연합군총사령부)와 중국 국민정부 사이에 체결된 귀환협정에 따라 귀국할 수 있었다면 수많은 귀환자(引揚者)와 함께 일본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만일본인은 전기 집단귀환(1946~1948년) 시에 100만 명 가량이 귀환을 했고, 후기 집단귀환(1953~1958년)에서도 3만여 명이 귀환했다.

하지만 중국인이 거둬들인 잔류고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미 중국인과 가정을 꾸리게 된 잔류부인에게도 귀환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다. 제반 여건 속에서 귀환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 여성들은 ‘조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잔류부인이 되어갔다. 후에 자세히 언급하듯 일본 정부는 패전 당시 13세 이상은 자신의 의지로 남게 되는 잔류부인으로, 13세 이하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남게 되는 잔류고아로 분류했다. 잔류부인은 개인적 의지에 의한 잔류자로 보고 귀환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애매한 기준으로 ‘부인’과 ‘고아’를 분리하는 것이 ‘중국잔류 일본인’의 운명을 또 한 번 갈라놓게 된다.

민간 차원에서 국교 정상화와 관계없이 인도적 문제로 진행됐던 후기 귀환마저, 1957년 발족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정권이 대중국 적대 정책을 취함에 따라 중단되기에 이른다. 후생성 귀환원호국장이 중의원

특별위원회(1958년 3월 30일)에서, 후에 잔류부인·잔류고아로 불리게 되는 6000여 명의 ‘중공 미귀환자’가 당시에 존재함을 밝혔지만, “대부분이 국제결혼을 하거나 혹은 중국인에게 거둬들여진 어린이들…저쪽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식으로 인식했다. 더욱이 1959년 성립한 미귀환자특별조치법에 의해 당시까지 소식이 불분명한 ‘중공 미귀환자’를 사망처리하게 되면서 이들은 호적에서 말소되기에 이른다. 즉, 중일관계가 악화되는 속에서 ‘자기책임’으로 ‘잔류’하는 ‘중공 미귀환자’는 기억에서만이 아니라 기록에서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사실 이 후기 귀환에서도 일본 정부의 관심은 중국에 억류된 전범의 귀환문제에 있었고, ‘중국 측의 권력이 작용해서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은 잔류부인·잔류고아는 관심 밖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귀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잔류고아가 귀국을 신청해도 자신이 일본인임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했으며, 잔류부인이 중국인 남편과 함께 일본에 귀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심지어 이 후기 귀환의 중단도 중일관계 악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게는 국민국가적 통합을 위한 배제의 차원에서 집단귀환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미나미 마코토는 외교사료관의 극비사료 분석을 통해 지적한다.¹⁵ 이것이 패전 시의 혼란에 이어 ‘중공 미귀환자’가 ‘중국잔류 일본인’으로 귀착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다.

이들에 대한 기억이 재생되는 것은 1972년 9월 일본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고나서다. 그 사이, 1966년부터 1977년까지 이어진 문화대혁명의 광풍 속에서 온갖 시달림을 받아야 했던 잔류부인은 고향에 대한 그

15 南誠, 「想像される『中国残留日本人』: 『国民』をめぐる包摂と排除」, 蘭信三 編, 『中国残留日本人という経験: 『満州』と日本を問い続けて』, 40~52쪽. 1956년 5월 29일의 텐진(天津)조약에서 ‘잔류부인’의 고향방문을 위한 일시귀국제도가 문서화되었다. 또한 후기 집단귀환이 종료되고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까지 723명이 개별적으로 귀환했다. 南誠, 「想像される『中国残留日本人』」, 44쪽.

리움에 필사적으로 일본어를 되뇌었고, 중국에서 일본인에 대한 멸칭으로 사용되는 ‘르벤끼즈(日本鬼子)’라 불리면서 청장년으로 성장한 잔류고아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나서게 된다. 중국인 양부모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비밀을 지키는 바람에 자신을 중국인으로 알고 살아온 이들도 적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중일국교 정상화 이후 잔류부인과 잔류고아의 일시귀국 및 영주귀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귀국을 위해서는 먼저 일본 내의 가족·친족을 찾아야 했는데,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더뎠다. 반면 재빨리 지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 1974년 결성된 ‘중일우호 손을 잡는 모임’과 같은 시민단체였다. 후생성(당시)이 각 언론사의 협력으로 공개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 1975년 3월의 일이고, 잔류고아들의 방일조사가 개시된 것이 1981년 3월의 일이었다.¹⁶ 이 방일조사와 그것에 따른 가족상봉 장면이 전국에 중계됨으로써 ‘중국잔류 일본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조명받게 된다. 이른바 일본판 이산가족찾기 방송이다.

그런데 이때 일시귀국·영주귀국하는 ‘중국잔류 일본인’의 선별기준은 자신이 일본인임을 인식·입증하는 ‘동정(同定)능력’, 일본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능력’, 집단귀환이 개시된 이후에 성인으로서 자기 판단과 의지에 의해 중국잔류를 선택했는지 여부의 ‘책임능력’이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연령을 기준으로 한 ‘책임능력’의 정도 차이가 잔류고아와 잔류부인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어, 1991년에 이르기까지는 잔류부인이 국비로 영주귀국할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된 것이다.¹⁷ 한편으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에 의해 잔류고아 방문조사가 1980년대 들어서 이루어졌는데,¹⁸ 이것도 ‘동정능력’이 없는 잔류고아들을 더이

16 庵谷磐, 『中国帰国者支援策の展開と問題点: ボランティアの視点から』, 『アジア遊学』, 85号, 東京: 勉誠出版, 2006, 78쪽.

17 張嵐, 『『中国残留孤児』の社会学: 日本と中国を生きる三世代のライフストーリー』, 東京: 青弓社, 2011, 46쪽.

18 ‘잔류고아’의 방일조사는 1981년 3월의 제1회부터 1990년대 말까지 30차례 이루어졌으며 2116명

상 방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중국 귀국자라는 수많은 ‘이질적인 동포’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 이들은 ‘귀환’이 아닌 ‘이민’이라는 이주 후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만 했다. 더군다나 후생성 원호국(당시)이 주로 담당하는, 혈통적으로 일본인인 이들에 대한 대응은 ‘귀환원호’라는 전후 귀환자의 원호정책의 연장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일본인으로 성장한 잔류부인은 그렇다치고라도 수십 년을 중국의 가정환경 속에서 살아온 잔류고아에게 일본의 언어와 풍습, 생활습관 등은 모두 낯선 것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중국인’ 가족들이 있는 관계로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영주귀국은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가족·친족의 신원보증인(외국인이 일본에 재류할 시에 체재비 등과 법령 준수에 대해서 보증하는 자)을 내세워야 했다.

일본 방문조사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라도 잔류고아는 친족 등이 신원보증인이 되어야 영주귀국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일 친족이 받아들이지기를 거부하면 귀국이 불가능했다. 1984년에는 중·일 양국이 구상서를 교환하여 잔류고아의 경우 신원 확인이 안 되더라도 영주귀국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결과 이듬해에는 신원 인수인 제도(身元引受人制度)가 도입되어 국가가 신원 인수인을 앞선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잔류부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친족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신원 인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난처해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귀국을 못하는 잔류고아도 적지 않았다. 결국 1989년에 특별 신원 인수인 제도를 통해 친족의 동의가 없는 잔류고아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1991년에는 잔류부인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되기에 이른다.¹⁹⁾

이 참가하여 670명의 신원이 판명됐다. 2000년 이후에는 중국에 담당자를 파견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방일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조. <http://www.mhlw.go.jp/houdou/2004/09/h0916-1e.html>

19 張嵐, 『中国残留孤児』の社会学: 日本と中国を生きる三世代のライフストーリー, 47~48쪽.

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중국에 남았다고 인식되는 잔류부인의 영주 귀국에는 여전히 커다란 장벽이 남아 있었다. 다음 절에서 다루는 귀국자의 일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귀국자 정착촉진센터’가 설립 당시에는 ‘중국 귀국 고아 정착촉진센터’라는 명칭이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초기의 귀국자 정책은 잔류고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별신원 인수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연고가 없는 잔류부인에게도 영주귀국의 길이 열렸지만, 귀국 여비 지급과 귀국 후의 공영주택 알선이라는 혜택이 제한되거나 주어지지 않는 등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 있었다. 결국 2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친족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잔류부인들은 여전히 영주귀국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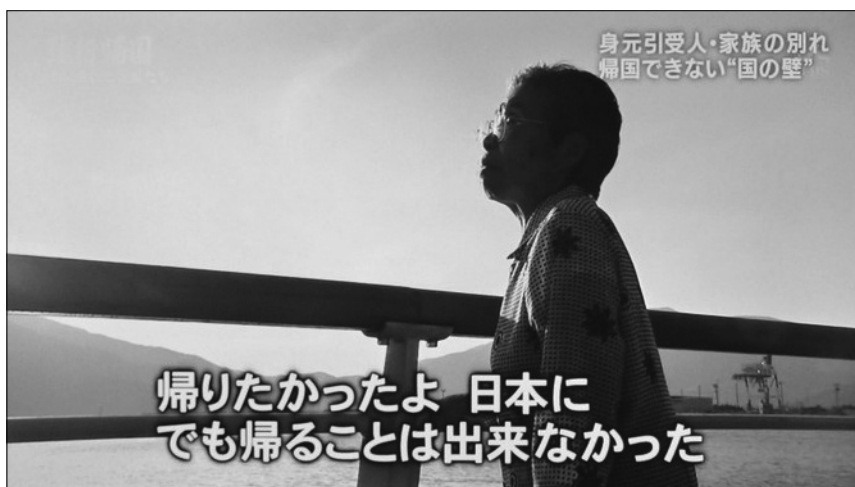
이들은 민간지원단체 춘양회와 더불어 스스로 이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93년 9월 친족의 반대로 영주귀국을 못하고 있던 12명의 잔류부인이 자비로 ‘강행귀국’을 했다.²⁰ 자신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에 입국한 이들은 공항에서 농성을 벌이며 일본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이것이 여론을 들끓게 하여 정부를 움직였다. 이윽고 1994년 ‘중국잔류 방인 등 귀국촉진 자립지원법’(중국 귀국자 지원법)이 제정된다.²¹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원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것에 법적인 근거가 부여되어, 귀국 촉진과 자립지원이 ‘국가의 책무’로 수행되었다.²²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중국 귀국자가 보통 일본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외국인 아닌 외국인’으로서의 생활은 귀국이 ‘옳은

20 춘양회(春陽會)는 전시 중에 중국전선에 파견되어 첩보활동을 벌이다가 전후에 낭곡사(浪曲師)로 활약하던 구니토모 다다시(国友忠)가 1983년 4월 ‘중국잔류 고아’의 일본 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서 설립한 지원단체로서, 점차 ‘중국잔류 부인’의 일시귀국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2012년 10월 1일 춘양회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 〈강행귀국 - 잊혀진 신부들(強行帰国 - 忘れ去られた花嫁たち)〉(TBS)이 방영되었다.

21 이 법률의 정식명칭은 ‘중국잔류 방인 등의 원활한 귀국 촉진 및 영주귀국 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中国残留邦人等の円滑な帰国の促進及び永住帰国後の自立の支援に関する法律)’이다.

22 井出孫六, 『中国残留邦人』, 165쪽.



〈그림 1〉 1993년 9월 친족의 반대로 영주귀국을 못하고 있던 12명의 잔류부인의 강행귀국을 그린 드라마 〈강행 귀국-잊혀진 신부들〉의 한 장면.

출처: 드라마 홈페이지(<http://www.tbs.co.jp/kyoukokuikoku/>)

선택’이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그것이 ‘옳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은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게 된, ‘본국 귀국자라는 (형태의) 이민’자들은 일본 사회에서도 특이한 존재다. 패전 직후의 귀환자도 아니고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는 더더욱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일본계 브라질인이나 재일코리안과도 다르다. 한편으로는 일본인이기에 귀국과 정착이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정부의 원조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잔류’해 중국인으로서 살아온 이력 때문에 일본 사회의 여러 국면에서 차별받고 ‘배제’되어 왔던 것이다.²³

다음 장에서는 중국 귀국자가 일본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이에 대한 일본의 행정적인 지원정책, 그리고 이들을 ‘배제’ 하는 일본 사회에 대한 귀국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살펴본다.

23 蘭信三 編, 『中国帰国者』の生活世界』, 東京: 行路社, 2000, 31쪽.

3. 일본의 중국 귀국자 정책과 배제에 대한 저항

1) 중국 귀국자 자립지원 프로그램

일본 사회에 정착하게 된 중국 귀국자의 긴급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언어 문제와 생활안정이었다. 당초부터 귀국 시 여비가 지급되는 동반가족은 미성년의 자녀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년이 된 자녀를 일본으로 불러들이려면 경제적 제약이 따랐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본어 습득보다 일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처음부터 이들의 일본 사회 정착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²⁴ 이들은 '본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새로이 생활기반을 만들어가야 했지만, 이미 장년(잔류고아) 혹은 노년(잔류부인 및 그 배우자)에 들어선 1세대가 일본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결국 대부분이 생활보호 대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부터 민간에서는 중국 귀국자를 위한 센터 설립의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사이타마(埼玉) 현 도코로자와(所沢) 시에 귀국자센터를 열게 된 것은 1984년에 들어서였다. 초기에는 귀국자들에게 단 하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일본어 학습 테이프를 건네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센터가 설립된 후로는 점차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공적 기관에 의한 귀국자에 대한 정착·자립지원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중국 귀국자 정착촉진센터는 중국 귀국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일본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초적인 일본어와 생활양식 등에 관해 집중 연수를 하는 시설이다. 귀국자는 이곳에 6개월간(2004년까지는 4개월이었음) 입소하여 연수와 함께 국적 회복(취적, 就籍) 등 각종 수속을 마치게 된다. 귀국자가 늘어남에 따라 귀국자센터도 각

24 井出孫六, 『中国残留邦人』, 145쪽.

지에 설립되었다. 그 가운데 귀국자가 초기에 입소하는 정착촉진센터는 ‘1차센터’라고 불리는데(최대 시 6개소), 이곳에서 연수를 마친 귀국자들은 연고가 있는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정착하게 된다. 신원 미판명자의 경우 각지로 분산되어 지역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정착을 도모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각 지역에 정착하게 된 귀국자는 다시 8개월간 해당 지역의 중국 귀국자 자립연수센터에서 일본어 교육 및 취업상담과 지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2차센터’다(최대 시 20개소).

하지만 언어습득 가능 시기를 경과한 귀국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무리 없이 지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일본어 학습이 필요했고,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귀국자에게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상담과 취업지원 등이 불가결했다. 그래서 지역 정착 후에 귀국자에 대한 교류 및 지원을 제공하는 중국 귀국자 지원교류센터가 이른바 ‘3차센터’의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귀국자 수가 점차 줄게 되고 오히려 1세대의 고령화 대책이나 2·3세의 교육 및 취업이 주된 이슈로 부상하게 되면서, 1차 및 2차센터는 대부분 폐소하게 되고 3차센터의 역할이 점차 강화된다. 2009년 이후에는 1차센터로서는 도쿄로자와가 유일하고, 2차센터는 도쿄와 오사카에만 설치되어 있는 반면, 3차센터는 전국 7개 지구에서 운영되고 있다.²⁵

귀국자들은 이처럼 정착단계에 맞춘 프로그램에 따라 일본 사회에 적응해 가게 된다. 하지만 1994년 중국 귀국자 지원법²⁶이 제정되고 나서도 ‘국가의 책무’는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 애초에 법률 제정 자체가 너무 늦었던 탓에 뒤늦게 전면적인 지원의 대상이 된 잔류부인은 이미 고령화하여 노후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잔류부인을 돌보는 조건으로 성인자녀 1세대의 동반이 허용되면서 이들의 취업, 주택, 취학 등

25 중국 귀국자 정착촉진센터에 대해서는 동 센터의 교무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참조. <http://www.kikokusha-center.or.jp>. 중국 귀국자 지원연수센터에 대해서는 전국의 센터를 포괄하는 홈페이지가 있다. <http://www.sien-center.or.jp>.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으나, 이것은 국가의 책무에 포함되지 않았다. 잔류고아 역시도 생활보호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2000년 당시 수급율은 65.5%), 이로 인해 중국에 남겨둔 양부모의 문안이나 성묘마저도 제약받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랐다. 잔류고아나 귀국자 2세, 3세의 경우도 언어나 생활상의 문제뿐 아니라 일본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닌 아이덴티티의 위기를 겪어야 했다.

2001년에 들어서자 각지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한센병 환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의 승소와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시켜, 잔류고아 및 잔류부인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게 된다. 특히 2002년 12월 잔류고아가 도쿄 지방법원에 ‘일본 정부가 종전 시 귀국의 길을 닫아 놓았고, 귀국 후에도 충분한 자립지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제소한 것을 시발로 소송은 전국 각지에 번져 나갔다. 이리하여 전국 각지에서 영주귀국한 잔류고아의 9할에 해당하는 2201명이 원고가 되는 대규모 소송이 벌어지게 된다.

소송은 2006년 12월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고베 지방법원의 1심판결(국가 공소)을 제외하면 원고의 패소로 끝났다. 특히, 2007년 1월 도쿄 지방법원은 “국가는 조기귀국을 실현하는 법적 의무나 법적인 자립지원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그 근거로 삼은 것이 “원고의 손해는 전쟁으로 발생한 손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⁶ 즉, 이 글의 4장에서 논의하겠지만, 전쟁이라는 비상상태에 의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희생은 국민 모두가 동등히 인내해야 한다는 ‘전쟁피해 수인론’이 적용된 것이다.

소송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지만 일본 정부는 잔류고아에 대한 지원책 확충을 표명했다. 여당의 프로젝트팀이 기초연금의 최고 수령액 지급과

26 『朝日新聞』, 2007년 1월 30일.

급부금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자, 전국의 국가 배상 청구소송의 원고단 대표는 동년 7월 여당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여 소송을 취하였다. 새로운 지원책에 따라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잔류고아는 노령기초연금의 최고 수령액(6만 6000엔)을 지급받게 되었다.²⁷ 또한 최대 8만 엔의 생활비 및 주택·의료비를 지급받게 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고도 그것에 준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11월에는 ‘중국 귀국자 지원법’이 개정되었다. 이듬해부터 신(新)지원책이 시행되어 중국 귀국자는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감시당하는 굴욕’으로부터 벗어나 중국의 친지방문이나 여행 등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신지원책이 도입된 후 이들의 생활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은 아래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09년 중국잔류 방인 등 실태조사」(이하 「2009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새로운 지원책의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 ‘어느 정도 만족’이 74.9%에 달했다.²⁸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한 복수응답에서는 ‘수입이 늘었다’가 57.5%로 가장 높았는데, 그 외에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33.8%), ‘행정기관·복지사무소의 대응이 좋아졌다’(31.8%)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심적 부담을 덜어낸 것이 이러한 평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생활정도’와 ‘귀국 후의 감상’(귀국하기를 잘했다/후회한다)에 대해서도 이전 조사(2005년)에 비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개정된 중국 귀국자 지원법 제14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이들 귀국자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

27 지금까지는 1994년 ‘중국잔류 방인 등 귀국촉진 자립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중국 귀국자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중국 거주기간의 보험료는 면제되고 국가부담분이 연금액에 반영되어 월 2만 2000엔을 지급받게 되었지만, 생활보호를 받게 되면 그것마저도 지급금액에서 제외되어 왔다.

28 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 『平成21年度 中国残留邦人等実態調査結果報告書』, 2010, 9쪽.

한 배려를 하고, 친절하고 공손하게 행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통상적인 법률적 문구를 벗어난 표현으로, 귀국자에 대해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응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귀국자들의 감상이 개선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홋카이도 중국 귀국자 지원교류센터의 고고 요이치로(向後洋一郎) 지원상담원(귀국자의 일상생활의 상담 등의 대응 및 지원급부 사무의 보조업무 등을 위해 지원급부 실시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은 이 조항의 표현이 일부 지원상담원의 과도한 동화 압력이나 행정담당자의 오만한 태도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²⁹

이처럼 중국 귀국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정착촉진센터, 자립연수센터, 그리고 지원교류센터라는 3단계의 ‘연수시설에서의 지원’과, 노령기초연금 및 보완 지원급부 등 ‘신지원책에 의한 생활지원’, 그리고 지역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정된 생활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지역에서의 지원’이라는 3개 영역에서 세밀하게 실행되고 있다. 세번째 ‘지역에서의 지원’에 대해서는 홋카이도 중국 귀국자 지원·교류센터(이하 홋카이도센터)의 활동과 함께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홋카이도 중국 귀국자 지원교류센터의 활동

「2009년 실태조사」를 보면 귀국자의 24.3%가 도쿄, 10.3%가 오사카, 7.7%가 가나가와 현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각 지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³⁰ 귀국자가 특정 지자체에 부담이 안 되도록 분산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로는 ‘중국잔류 일본인’의 귀국 희망자 대부분이 영주 귀국함으로써 지원의 방향도 귀국 및 정착으로부터 경제적 자립 및 노후 생활의 안정으로 옮겨졌고, ‘연수시설에서의 지원’도 3차센터인 중국 귀

29 홋카이도 중국 귀국자 지원·교류센터 상담원 고고 요이치로와의 인터뷰, 2012년 11월 21일.

30 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 『平成21年度 中国残留邦人等実態調査結果報告書』, 1쪽.

국자 지원교류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홋카이도 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귀국자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고찰한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홋카이도의 귀국자 비율은 3.3%로 전국에서 8번째에 해당된다.

이에 앞서 귀국자의 가족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2012년 10월 말 현재 중일국교 정상화 후의 귀국자 총수는 6685세대, 2만 851명이다. 그 중 잔류고아 가족이 2547세대(4세대는 잔류고아 부부)로 9364명, 잔류부인 가족이 4134세대로 1만 1487명이다.³¹ 그런데 이것은 국비에 의한 귀국자 수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비에 의한 영주귀국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후에 자비로 불러들인 가족까지를 포함하면 아마도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9년 실태조사」에서 귀국자 1인의 평균 가족수가 9.17명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비 귀국자 수보다 훨씬 많은 중국 귀국자가 일본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3차센터인 중국 귀국자 지원교류센터는 1, 2차센터와 달리 국비 지원의 대상이 되는 귀국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미혼 자녀만이 아니라 후에 불러들인 가족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간의 제한 없이 영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귀국자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일본어 교육이다. 2차센터가 설치된 도쿄와 오사카 이외 지역에 정착한 사람은 일본어 교육기간이 도쿄로자와(所沢)센터에서의 6개월에 불과하다. 40대를 넘어서 귀국하게 되면 일본어 습득이 여의치 않고, 그 때문에 취직이 곤란하거나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귀국자에게 일본어 교육이 절실한 까닭이다. 귀국자의 일본어 능력을 보면 「2009년 실태조사」에서는 ‘일상생활 회화에 전혀 불편이 없다’는 응답이 43.7%로 이전보다 늘었지만, 아직도 ‘간단한 인사말 정도’가 25.1%, ‘전

31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bunya/engo/seido02/toukei.html>(2012년 11월 26일 최종 검색)

32 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 『平成21年度 中国残留邦人等実態調査結果報告書』, 25쪽.

혀 못한다'라는 응답도 4.9%나 되었다.³³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홋카이도센터를 이용하는 중국 귀국자의 경우, 귀국자끼리는 중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사할린 귀국자의 경우 도시 지역에 일본인 커뮤니티가 있어서 일본어 사용공간이 있었지만, 중국 귀국자는 대부분이 농촌지역에서 고립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잔류부인의 경우도 일본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일본어 프로그램은 절실한 것이었다.

홋카이도센터의 경우 사할린 귀국자가 많기 때문에 중국 귀국자와 사할린 귀국자를 위한 반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수준은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뉘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코스와 직장인을 위한 야간수업 코스도 개설되어 있다. 그 외 일본어 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코스와 일본 태생의 중국 귀국자 자녀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코스도 있다. 가정에서 부모 혹은 조부모와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다. 홋카이도센터에는 일본어 수업을 위해 6명의 비상근 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도코로자와센터를 마친 후 홋카이도에 정착하게 되는 신규 정착자를 위한 코스도 있다. 2차센터인 자립연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3차센터가 일본어 교육 및 생활지도를 수행하게 되기에 홋카이도센터에서도 신규 정착자를 위한 8개월 코스의 집중강좌를 실시한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의 협력을 얻어 일본어 회화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사실 연수시설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자원봉사의 힘이 불가결했다. 홋카이도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홋카이도사회복지협의회가 후생노동성의

33 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 『平成21年度 中国残留邦人等実態調査結果報告書』, 2쪽. 그 외 '물건을 사거나 교통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가 22.6%, 무응답이 3.7%.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데, 각지의 귀국자센터도 국가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 귀국자들에게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 것이 이러한 시민단체였다. 홋카이도의 경우 일중우호도민운동연합회의(1971년 설립), 홋카이도일중우호센터 (1972년 설립) 등이 국가의 귀국자 정책이 정립되기 전부터 중국 귀국자를 위한 일본어 학습 및 생활상담 활동을 벌여왔다.

한 예로 홋카이도 일중우호센터는 중일국교 정상화 이후에 중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모임으로 시작됐는데, 점차 중국 귀국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들에게 일본어와 취업 등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귀국자를 위한 일본어 교실을 개설하게 된다. 1980년대 들어 홋카이도에도 귀국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일중우호센터는 홋카이도와 삿포로 시의 조성금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일본어 및 생활상담 등 지원활동을 펼쳤다. 만몽개척단에서 의사로 활동하다가 전후에 ‘도피행’을 거쳐 귀환, 삿포로 시에 거주하는 한 의사가 귀국자를 위해 우에일본어학교를 설립했을 때에도 이에 협력했다.

1987년 홋카이도에도 1차센터인 중국 귀국 고아 정착촉진센터가 설립되게 되는데(1994년 중국 귀국자 정착촉진센터로 변경), 당시 시설로 활용된 것이 바로 우에일본어학교였다. 일중우호센터도 홋카이도의 요청으로 일본어 강사, 생활상담원을 파견하여 운영에 협력했다. 그리고 회원들도 신원인수인 및 자립지도원(구 귀환자특별생활지도원)의 위촉을 받아 정착을 지원했다. 1991년 동 센터가 폐쇄된 후 타 지역과는 달리 홋카이도에는 2차센터인 자립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당시 홋카이도는 독자적으로 1990년 자립지원센터 강좌를 설치했고 일중우호센터도 이에 협력했다. 1995년 정식으로 홋카이도 중국 귀국자 자립지원센터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일중우호센터가 위탁을 받아 이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에는 귀국자의 증가는 물론 국비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가족의 귀국이 증가하여 이들의 주택, 일본어, 취업, 취학 등 많은

문제를 노정하게 되었고, 일중우호센터는 자비귀국자가 조기에 자립하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후 귀국자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고 지원의 활동범위와 규모가 커져서 시민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지만, 일중우호센터는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지원·교류센터 이외의 일본어 교실의 운영이나 상담원·자립지도원·통역 등의 파견, 귀국자 단체의 설립 지원, 어린이를 위한 일본어 학습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전술한 홋카이도센터의 상담원 고고 요이치로 씨도 일중우호센터의 창립멤버였다. 하지만 2011년 일중우호센터는 회원들의 고령화로 더 이상의 활동이 어려워져 해산하게 된다.

다시 홋카이도센터의 활동으로 돌아오면, 이 센터는 일본어 수업 외에 컴퓨터 수업도 실시하며 중국어나 러시아어가 가능한 상담원을 배치하여 생활상담이나 취업상담에도 응한다. 고령의 귀국자가 개호 서비스를 받으려 할 때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이들 상담원이나 자립지원통역³⁴이 파견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3차센터로서는 교류 프로그램도 중요한 사업이다. 귀국자들이 지역의 주민활동에 참가하여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화활동 체험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계몽활동을 펼치며, 온천 여행 혹은 1년에 한 번씩 중국 귀국자와 사할린 귀국자로 나뉘서 실시하는 귀국자 교류파티를 통해 귀국자들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홋카이도의 경우 지원·교류센터가 있는 삿포로 이외의 지역에도 귀국자들이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파티는 이들이 1년에 한 번 한자리에 모이는 의미있는 자리다. 그 밖에 삿포로 외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각지의 자원봉사자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연수회 및 지원기관연락회의를 운영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각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34 1989년 시작된 자립지원통역 파견사업에 의해 중국 귀국자가 의료기관에서 진찰받거나, 복지사무소

이러한 활동은 2008년부터 시행된 신지원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년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과의 ‘원호기획과 중국고아 등 대책실’에서 실시하는 설명회인 ‘중국잔류 방인 등 대책에 관한 전국담당자 회의’에서 주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타 지역의 지원·교류센터에서도 공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앞으로 중국 귀국자들에게 2세, 3세의 사회 부적응이나 학업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지만 지역에 밀착한 지원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점차 중국 귀국자의 2세, 3세가 이들의 중심세대가 되면 위와 같은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혈통적으로 일본인’인 이들은 자연스럽게 일본 사회에 ‘동화’되어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잔류부인 및 잔류고아의 경우 일본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 ‘귀국(이주)’하게 된 배우자나 자식들에게는 일본에서의 생활이 새로운 사회의 적응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 3세는 지금까지 형성해 온 자신의 문화를 되돌아보게 되고, 독자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의 중국 귀국자 2, 3세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아이덴티티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지 않다.³⁵

여기서는 2, 3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거론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역사의식을 어떻게 규정하여 귀속의식을 형성해 나갈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트랜스내셔널한 ‘화교’로서의 혼성적 아이덴티티를

가 가정을 방문하여 조인, 지도 및 원조할 시에 동행하여 통역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정착촉진센터 수료 후 혹은 귀국 후 3년 이내의 귀국자가 이용할 수 있다.

35 大栗真佐美, 「中国帰国者のアイデンティティ」, 『京都産業大学論集 人文科学系』, 第45号, 2012; 大久保明男, 「アイデンティティ・クライシスを越えて: 「中国日裔青年」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をもとめて」, 蘭信三 編, 『中国帰国者の生活世界』, 2000.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아이덴티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쟁과 식민지, 그리고 냉전에 의한 기민과 이산이라는 역사성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미나미 마코토는 중국 귀국자의 역사적 태생에 대해서 바라보면 ‘잔류 일본인’의 역사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역사/사회적으로 구축된 ‘잔류 일본인’의 경계선은 일본 사회를 살아가는 중국 귀국자들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요인이며, 그 역사성이 하나의 메타포로서 기능하여 집단이나 구성원의 역사의식을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³⁶

그렇다면 ‘중국잔류 일본인’이라는 역사성은 2000년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이의제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다른 마이너리티 집단에 대해서나 역사적 보상문제에서 일찌기 보인 적이 없는 지원을 약속한 ‘신지원책’과 타협함으로써 동결되었을까. 아니면 미나미 마코토가 지적하듯이 중국 귀국자로서의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으면서도, 중국문화를 문화자본으로 활용해서 때로는 ‘중국인’이라는 위치에 서면서 사회적 실천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³⁷ 이처럼 본질적/고정적인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스스로가 획득한 국가에 포섭된 귀국자라는 법적 지위에 머물지 않고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저항의 경험을 통해 사회운동 등 또 다른 위치에 설 수 있다면, 중국 귀국자는 ‘혈통적 일본인’으로서의 타협이 아닌 보편적인 전쟁보상론을 경유하여 다른 마이너리티 혹은 전쟁 피해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을 중국 귀국자의 또 하나의 특성, 즉 전쟁 피해자로서의 ‘본국 귀국자’라는 역사적 존재성으로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36 南誠, 『『中国帰国者』の歴史/社会的形成: 国民, エスニシティ, コミュニティ』, 永野武 編, 『チャイニーズネスとトランス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 東京: 明石書店, 2010, 117쪽.

37 南誠, 『国籍とアイデンティティのパフォーマンス: 個別引揚者と『中国残留日本人』の語りを事例に』, 陳天璽他 編, 『越境とアイデンティフィケーション: 国籍・パスポート・IDカード』, 新曜社, 2012, 317쪽.

4. 수인론(受忍論)과 전쟁보상론의 사이

잔류고아와 잔류부인이 각지에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2007년부터 차례로 취하됨으로써 ‘중국잔류 일본인’을 낳고 지금까지 방치해 온 국가의 책임을 물어 사죄를 받는 것은 좌절되었다. 당연히 원고 중에는 소송취하에 불만을 갖는 사람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그간의 입장을 바꾸어 ‘특별한 조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음으로써 이들이 여생이나마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얻은 것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중국 귀국자 문제를 취재해 온 『아사히신문』 오쿠보 마키(大久保真紀) 기자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이 불문에 붙여진 것은 아니며 “이후에도 왜 잔류고아가 발생하고 왜 고아들이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국가의 책임과 그 역사를 지속적으로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듯이,³⁸ 중국 귀국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만주 귀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나미 마코토가 언급한 것처럼 소송에서 제기한 국가의 책임은 자신들의 존재 의의에 직결되고 “국민 전체로 보면 소수파인 사회적 약자”(도쿄소송 원고단 대표 시미즈 히로오)들이 “조국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당성은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송은 고베 지방법원 판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소하기는 했지만, 법정에서도 국가의 법적인 의무나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가의 책임규명과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전쟁피해 수인론’이 건재했기 때문이다. 즉, “무릇 전쟁이라는 국가가 존망을 건 비상사태 하에서는 국민이 그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해

38 大久保真紀, 「中国帰国者と国家賠償請求集団訴訟」, 蘭信三 編, 『中国残留日本人という経験』, 331쪽.

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무언가의 희생을 부득이하게 당했다고 해도, 그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수행하는 전쟁에 의한 ‘일반의 희생’으로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수인(受忍)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론을 가지고 국가의 전쟁책임 등을 운운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해도, 법률론을 가지고 개선, 강화라고 하는 이른바 정치행위(통치행위)에서의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등에 대해 법률상의 책임을 추궁하고 그 법률적 구제를 요구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라는 수인론에 번번히 가로막혀 온 것이다.

이러한 수인론은 원폭 피해자 대책 기본문제 간담회의 의견서(1980년 12월 11일)에서 처음 제시되었다.³⁹ 수인론은 전후 귀환한 일본인이 일으킨 채외재산 보상 청구소송이나 원폭 피해 소송, 공습 피해자 소송, 구 식민지 출신자의 군인·군속(B·C급 전범) 소송에서 반복되어 왔으며, 급기야 중국 귀국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에도 적용되었다. 한국의 전쟁 피해자가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일으킨 소송에 대해서는 한일협정(1965)에 따라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근거로 기각하고 있으나, ‘B·C급 전범’ 소송에서 (현재는 한국인인) 원고가 당시 ‘일본 국민’이었다는 이유로 수인론이 적용되고 있듯이 수인론은 구 식민지 출신자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인론에 적용되었다고 해서 모든 소송에 대해서 국가가 똑같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원폭 피해자의 경우, 1957년 원폭 의료법이 제정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온 피폭자가 법적 원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원폭의료법의 취지는 ‘건강상 특별한 상태에 놓인’ 피폭자에 대해서 국가가 건강진단과 의료를 행하는 것이다. 피폭자의 ‘의학적, 경제적, 정치적 특이성’을 고려한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전쟁 피해자와 구분하기 위해서도 방사선에 기인하는 피해를 전면에 내세워야 했다.⁴⁰

39 直野章子, 『被ばくと補償: 広島, 長崎, そして福島』, 東京: 平凡社, 2011, 222쪽.

40 直野章子, 『被ばくと補償』, 101쪽.

이처럼 동 법은 생활원호 및 사망자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1956년 결성된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협의회’(일본피단협) 등 시민 단체가 원폭 피해자들이 ‘병과 생활고의 악순환’에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당을 중심으로 원폭 사용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과 국가의 책임임을 입법근거로 피폭자의 생활지원과 유족원호를 담은 본격적인 원호법안을 추진하게 된다.⁴¹ 이렇게 해서 1968년에는 ‘원폭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피폭자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사회보장으로서의 시책일 뿐, 피폭자들이 요구해 온 국가보상의 조치는 아니었다.⁴² 이후 피폭자의 범위나 제한 조건이 점차 완화되어 가는 한편, 일본피단협은 사망자의 보상을 포함한 원호법 제정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간다.

중국 귀국자 지원법이 제정된 것과 같은 1994년 12월,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이 통합되어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것 또한 지속적 활동을 통해 국가보상의 이론적 근거를 정비해 온 일본피단협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피폭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죽은 이들이 편안히 눈 감을 수 있고 또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이들이 두 번 다시 원폭 피해를 강요 받고 수인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반 세기에 걸쳐 싸워왔다. 하지만 국가는 원폭 피해를 방사선에 의한 건강 피해로 한정하고, 국가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⁴³

중국 귀국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수 인론을 이유로 기각되고 있다. 이것은 민간인의 전쟁 피해에 대한 국가

41 直野章子, 『被ばくと補償』, 106쪽.

42 直野章子, 『被ばくと補償』, 112쪽.

43 直野章子, 『被ばくと補償』, 123쪽.

의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특히, 각지에서 제기된 공습 피해에 대한 소송은 번번히 패소하여 아무런 보상이나 원호조치도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전쟁 피해자가 일본 정부 및 기업을 상대로 개인 청구권을 요구하며 일으킨 소송의 경우, 이상과 같은 수인론이 적용된다기보다 오히려 한일협정의 존재가 수인론의 적용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슈(九州)대학의 나오노 아키코(直野章子)는 수인론에 대해 비상사태에서의 희생이 마치 피해 실태 그 자체가 평등하며, 피해가 평등하게 부담되었다라는 논리를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국민 모두가 똑같이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 없다고 반박하고, ‘헌법이 예상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보상이 거절된다면 피해가 심대한 자가 더 많은 ‘수인’을 강요받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수인’해야 하는 정도의 불평등이 원호정책에 의해 시정되기는커녕 도리어 확대되어 왔다고 비판한다. 결국 전후 일본에서는 무언가 특별하다고 국가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은 피해에 한해서, 그리고 일본의 전쟁 피해자에 한해서 보호시책이 주로 강구되어 왔던 것이다.⁴⁴

나오노는 도쿄와 오사카의 공습재판과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를 염두에 두고, 또한 군인·군속에 대해서는 총계 50조 엔의 예산이 사용되어 온 것을 고려하여, 수인론이라는 국가우선주의를 타파하고 국적이나 국민의 구별없이 피해의 실태에 따라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⁵

국가와의 특별한 고용관계에 있는 군인·군속은 둘째치고라도, 원폭 피해자의 경우 방사선에 기인하여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만발성(晩發性)이라는 ‘특별한 희생’을 고려하고, 전후 귀환자의 경우 상실한 재산

44 直野章子, 『被ばくと補償』, 126쪽.

45 直野章子, 『戦争被害『国民受忍論』捨て補償を』, 『朝日新聞』, 2010년 12월 11일.

이 ‘현저한 특이성’을 갖기 때문에 각각 원호정책이 시행되어 왔다.⁴⁶ 중국 귀국자의 경우에도 특별한 조치를 통해 소수파인 사회적 약자로서 여느 마이너리티나 전쟁 피해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원호지원을 받고 있다. 즉, 중국 귀국자에 대한 처우는 수인론과 전쟁보상론의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귀국자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일으킨 기본정신을 유지하고 마이너리티로서 다른 전쟁 피해자와 함께 ‘수인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일본 정부는 잔류고아만의 특별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전쟁 피해자는 시베리아 억류자나 공습 피해자들도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지만,⁴⁷ 사실 일본 정부가 우려했던 것은 비단 일본 국내의 피해자만은 아니었다. 1994년 잔류부인의 강행귀국을 기획한 춘양회의 구니토모 다다시(国友忠) 회장은 『아사히신문』 오구로 마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정부에 귀국 촉진을 요청하자 ‘대만 출신 군인이나 조선인 강제노동 등 보상문제가 분출하면 곤란하다’며 본심을 몇 번인가 드러내기도 했다”고 답하고 있다.⁴⁸ 이처럼 중국 귀국자에 대한 지원은 여타 전후보상 문제나 관련 소송과도 맞물려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사할린잔류 한인의 우편저금 등 미지불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귀국자 문제를 단순히 전후의 뒤늦은 귀환의 문제가 아닌 전쟁 피해와 희생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논의한다면 한국의 식민지 지배 피해자와의 연대의 가능성도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잔류 일본인의 발생요인을 소련의 침공으로 돌리고 일본의 만주국 건설이나 이민정책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은 역사인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최근의 연구는, 이들이 특별한 조치에 만족하지

46 直野章子, 『被ばくと補償: 広島, 長崎, そして福島』, 127쪽. 전후 귀환자에 대해서는 1957년 각각 ‘인양자 급부금 등 지급법’과 ‘인양자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원호의 입법 조치가 취해졌다. 直野章子, 『被ばくと補償: 広島, 長崎, そして福島』, 128쪽.

47 『朝日新聞』, 2007년 2월 1일.

48 『朝日新聞』, 1993년 9월 10일.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야만 중국 귀국자의 역사의식을 떠받치는 역사성이 메타포에 머물지 않고 역사가 되어,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러나 다시는 반복되어서 안 되는 고통을 전쟁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이라는 보편적인 인권과 가치 속에 위치지울 수 있는 것이다.

중국 귀국자는 이러한 이중적인 위치의 정치가 구현하는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통해 원호시책의 국적 조향을 뒤흔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대를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일본의 전쟁 피해자, 특히 원폭 피해자에 대한 보편적 인권으로부터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필요할 것이다.

5. 맺으며: ‘본국 귀국자’의 다중적 아이덴티티의 가능성

이미 인생 말년에 들어선 귀국자 1세들을 중국 귀국자의 역사적 생성에 대한 일본 국가의 책임을 묻는 정치의 장으로 떠미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1세들이 단지 신지원책에 만족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그들이 놓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일본의 국민국가·시민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갖게 하는 잔류고아는 새로운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존 일본 사회의 현실에 파문을 던지는 존재다.⁴⁹ ‘중국잔류 일본인’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평생 꿈꾸어 오던 “조국의 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로 보면 소수파인 사회적 약자”임과 동시에 “민족적 소수자”이기도 한 그들은 문화적이고 다언어적인 실천을 통해 일본의 단일 민족주의적인 틀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고 자신들의 다중적 아이덴티티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있다고 보이

49 修岩・浅野慎一, 「孤立と差別: 永住帰国した中国残留日本人孤児の家族・社会関係」, 『神戸大学大学院人間発達環境学研究科研究紀要』第4巻 第2号, 2011, 190쪽.



〈그림 2〉 홋카이도 중국 귀국자 지원·교류센터 주최 '카라후토 등 귀국자 교류파티', 2012년 11월 11일, 삿포로.
출처: 필자 촬영

기 때문이다.

최근의 중일관계 악화를 가장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것도 다름 아닌 이들 중국 귀국자다. 중국에도 많은 친족들이 살고 있고 또한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몸소 경험한 이들에게 중일간 전쟁 발발에 대한 근심에는 절실함이 배어 있다. 2008년 쓰촨성(四川省)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즉각 반응하여 기부활동은 벌인 것도 이들 중국 귀국자였다.

사할린 귀국자의 다문화적이고 다언어적인 다중적 아이덴티티도 이에 못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1일 삿포로에서 있었던 '카라후토(사할린) 등 귀국자 교류파티'에서의 일화를 소개하기로 하고 아울러 그것으로 결어를 대신하고자 한다.

〈그림 2〉는 본문에서도 언급한 홋카이도 중국 귀국자 지원교류센터가 매년 개최하는 사할린 귀국자를 위한 교류파티의 모습이다. 2012년에

는 약 80여 명이 참가했다. 그런데 연단에서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귀국자는 아리랑을 연주하고 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앞으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다. 파티는 마지막에 후루사토(ふるさと, 고향)라는 노래를 합창하고 끝나는 것이 보통인데 이들에게는 아리랑이 더 친숙한 것 같았다.

이들이 아리랑 노랫가락에 흥이 나고 따라부르는 것은 사할린에 있을 때 사할린잔류 한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 사할린 귀국자 중에는 한인도 더러 존재한다. 한인이기는 하지만 남편이 중국잔류 일본인 가족이라서 자녀가족이 함께 귀국할 수 있는 일본으로 오게 된 것이다. 사할린에는 일본인과 한인이 결혼한 가족이 적지 않고, 이들 가정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뒤섞이는 경우가 많아 사할린 귀국자 중에는 이 세 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국과 일본의 사할린 잔류자에 대한 정책의 차이 때문에 시대를 따라 일본에 왔지만 친정 부모가 안산 고향마을의 사할린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중국 및 사할린의 귀국자의 라이프 스토리는 각기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은 영토문제나 역사문제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하는 동아시아가 위기를 넘어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2012년 4월에도 한국 국적을 회복한 중국동포 1세들이 국적 회복 동포 지원특별법 제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 귀한 동포가 놓인 상황도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고립 등 일본의 본국 귀국자가 직면하는 것과 같은 많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 국적의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는 2012년 8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위로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을 확대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특별법은 정부와 여론의 무관심 속에서 번번히 무

산되어 왔다.⁵⁰

한국에서의 귀한동포나 사할린동포는 일본의 중국 귀국자와 역사적 경위나 정치적 배경이 다르지만, 위와 같은 의미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다중적 아이덴티티의 주체로서의 ‘본국 귀국자’ 연구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본국 귀국자’의 비교연구와 분석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50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11월 13일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일본 TV 영상물의 재일제주인 표상 | 양인실

투고일자: 2012. 11. 16 | 심사완료일자: 2012. 12. 1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최근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서는 재일제주인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제주도와 오사카의 지역방송국을 중심으로 재일제주인을 중심으로 한 특집 다큐멘터리나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 이들 최근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는 재일제주인을 재현하면서 주로 밀항, 불법체류, 오사카 시 이쿠노쿠, 난민 신청, 재일외국인들 간의 사랑이라는 요소를 다룬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밀항이 급증하던 1965년을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에도 오사카 시 이쿠노쿠를 중심으로 밀항과 불법체류, 난민 신청이 중심이 되어 재일제주인 문제가 다루어지는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에서 재일제주인이 다루어질 때 반드시 나오는 제주4·3사건, 밀항, 다른 재일조선인들과는 다른 방식의 고향에 대한 향수 등을 들어, 각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일제주인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1960년대 영상물은 재일제주인들이 4·3사건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으로 왔고, 그 과정에서 ‘밀항’이라는 수단을 선택했으며, 불법체류자로 일본에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가족애와 미담의 대상으로 재일제주인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재일제주인 1세 여성들을 다룬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는 재일제주인 여성으로서의 삶과 굴곡이 잘 표현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화화되는 과정에서 역사와 맥락이 삭제되기도 했다. 또한 재일제주인 3세나 4세가 주인공이 되면 이들의 관심은 정치나 역사보다는 한국의 문화로 옮겨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재일제주인 1세와 2세들의 밀항의 기억은 이들을 연결하는 키워드가 된다. 그리고 재일조선인들을 등장시키는 일본의 많은 영상 텍스트들이 재일조선인 1세와 3세를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뇌로 연결하고, 2세를 타자화해 왔다면, 최근의 영상 텍스트는 2세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삶과 뿌리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문제제기를 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기존의 텍스트와는 다르게 재일조선인을 다룬 영상물, 특히 재일제주인을 다룬 영상물들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온 일본의 다문화주의를 여전히 답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재일제주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밀항, 난민, 아이덴티티, 다문화주의, 제주4·3사건

‘중국잔류 일본인’을 둘러싼 포섭과 저항: ‘본국 귀국자’라는 다중적 아이덴티티의 가능성 | 현무암

투고일자: 2012. 11. 26 | 심사완료일자: 2012. 12. 10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1972년의 중일국교 정상화 이후, 특히 1980년에 들어서 전후에 중국으로부터 귀환하지 못했던 많은 ‘잔류 일본인’이 귀국하게 되었다. 이들이 일본 패전 후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인의 가정에 들어가게 된 이른바 ‘잔류부인’ 및 ‘잔류고아’다. 하지만 간신히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도 ‘중국잔류 일본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냉대와 사회적인 차별 속에서 이들은 사회적인 마이너리티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지원과 존재의 정당성을 위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싸워나가야 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여느 전쟁 피해에 대한 소송에서처럼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쟁피해 수인론(受忍論)’을 가지고 부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조치’를 통해 구원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수인론’과 전쟁 책임론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중국잔류 일본인’을 통해 기민과 이산이라는 역사성이 투

영되는 이들에 대한 일본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일본 사회 속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위치 및 전후 역사인식 속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주제어: '중국잔류 일본인', 중국 귀국자 지원 · 교류센터, 수인론(受忍論), 전쟁책임론

『1Q84』의 세계에 떠오른 두 개의 달: '옴문제' · 시스템 · 마이너리티 | 박규태

투고일자: 2012. 11. 15 | 심사완료일자: 2012. 12. 6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이 글의 목적은 '시스템'과 '마이너리티'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 속에 등장하는 다채로운 신화적 이항대립, 가령 선과 악의 쌍을 비롯하여, 아오마메와 덴고, 옴교단과 일본 사회, 가해자와 피해자, 원인과 결과, 지상과 지하, 마더와 도터, 픽션과 리얼리티, 상처와 치유, 평범과 비범 등(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것이 '두 개의 달'이다)이 가지는 의미를 '옴문제'와 연동시키면서 추적하는 데에 있다. 이때 '옴문제'란 1995년에 발생한 옴진리교 사건을 전후한 프레(pre)옴 및 포스트(post)옴적인 정신상황을 가리키는 말로서, 구체적으로 ① 악에 대한 일본인의 무감각, ② 자발적 혹은 자각적인 마인드 컨트롤의 위험성, ③ 마이너리티의 피난처 부재로 요약될 만한 일본문화와 사회시스템의 맹점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 안의 옴진리교'로 일컬어질 만한 옴진리교와 일본 사회의 구조적 상동성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1Q84』 속의 '시스템'과 '마이너리티'는 누구인가? 파타타임 청부킬러이자 스포츠 인스트럭터인 아오마메와 소설가이자 수학학원 강사인 덴고는 자신들이 1984년의 세계로부터 두 개의 달이 떠 있는 1Q84년의 세계로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된다. 초등학교 동급생이었던 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10살 때 학교 교실에서 서로의 작은 손을 잡았던 장면을 하나의 '구원'으로 기억한다. 한편 쥘트교단 교주의 딸인 17세의 후카에리는 덴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어릴 적 트라우마의 기억을 소설화한 「공기빈 데기」를 출간한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지만, 리틀피플을 세상에 불러들이는 계기가 된다. 이 글은 전술한 '옴문제'와 관련하여 이들 세 주인공이 '마이너리티'의 대변인이며, 리틀피플은 '시스템'을 표상하는 코드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 과정에서 『1Q84』는 하나의 현대신화로서의 '마이너리티 신화'라는 점, 그리고 포스트옴 시대의 일본 사회에서 '역사'와 '모노가타리' 또한 '신화'의 변주극임을 시사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글은 『1Q84』의 신화론적 분석을 통해 옴사건을 전후한 현대 일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천착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무라카미 하루키, 『1Q84』, 옴진리교, 시스템, 마이너리티, 신화, 역사, 모노가타리

연구논단

일본의 고용관행과 젠더: 결혼퇴직을 중심으로 | 에노키 가즈에

투고일자: 2012. 7. 2 | 심사완료일자: 2012. 8. 16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이 글은 일본 노사관계와 젠더와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시도로서 결혼퇴직제도의 전개에 주목했다. 일본의 경우, 전전부터 여성의 노동력화가 진전함으로써 고용의 장에서 결혼퇴직제가 실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성이 '주부'로서 가사노동을 담당한다는 근대적 라이프스타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고용을 청년기·미혼 시로 한정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전후로 이어졌던 것이다. 결혼퇴직의 제도화는 고도성장기에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그것은 정규 종

descendant generations. Moreover, while many visual texts on Koreans living in Japan in general, who have come from regions other than Jeju, tend to emphasize the ethnic identity of the first and third immigrant generations as that of “*zainichi* Koreans” (Koreans residing in Japan), such texts often present the second generation as “Others” in the story.

On the contrary, visual texts on Koreans of the Jeju origin differ from such visual texts in that they try to help the second generation Koreans from Jeju build up their confidence about their ethnic origin and roots. However, even though films on Koreans living in Japan have become increasingly diversified in terms of themes, especially those films on Koreans from Jeju, these texts still seem to be reproducing the discourse of the Japanese multiculturalism, which presents an unrealistically hopeful future while silencing the past.

• **Keywords:** Koreans in Japan from Jeju, television documantaries, smuggling, refugee, identity, multiculturalism, Jeju 4.3 Massacre

The Multiple Identities of the Japanese who Remained in China after WWII

| HYUN Moo Am

Following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in 1972, many of Japanese who remained in China after WWII because they could not be repatriated during the postwar period returned to their homeland, especially in the 1980s. These people, known as “Japanese orphans” or “Japanese women remaining in China,” are people that lived on along with the Chinese people in order to survive the aftermaths of Japan’s defeat.

They were able to return to their motherland with difficulty, however, they were treated not as Japanese but as a foreigner. Therefore, as a minority, they had to struggle to receive reparation from the nation, which required having to prove their residency in Japan. In the end, the Japanese government deni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based on the ‘war damage endurance theor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special policy’ to support them.

This paper examines Japan’s policies toward the Japanese who remained in China after WWII, which stand on the border between the ‘war damage endurance theory’ and the ideology of war responsibility. This paper considers the position of these people as well as the meaning that they hold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consciousness’ during postwar Japan.

• **Keywords:** Japanese Left-Behind in China, The support and communication center for people returning from China, war damage endurance theory, war responsibility

The Two Moons Appearing in the World of 1Q84: Aum-Question , System, and Minority

| PARK Kyu Ta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s of the various mytho-magical binary oppositions present in the novel, *1Q84*, by Haruki Murakami by focusing on the two key-words, ‘System’ and ‘Minority’. These include ‘the Year of 1984 and 1Q84’; ‘Mother and